

# 총 무 처

110-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-6/전화(02)3703-3220~2/전송723-0298(김호규)

문서번호 의정12630-

시행일자 '97. 10. ( )

받 음 받는곳참조

참 조

취급		장 관	국 무 총 리
보존			
차 관	우근민	심우영	로기
국 장	최석중	기획관리실장	이
과 장	박현준		
기안	오세신		협조

제 목 국기개양 · 관리 및 보급에 관한지시(국무총리 지시 1997-/6호)

그간 연중 24시간 국기개양 및 국기의 대형화 등 법 국민적인 『태극기 사랑운동』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, 아직도 훼손된 국기의 게 양으로 국기의 존엄성을 실추시키거나 건물 · 장소 등에 비해 너무 작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“국기개양 · 관리 및 보급에 관한지침”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국기의 개양 ·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침 1부. 끝.

## 국 무 총 리

받는곳 : 가, 나, 다, 마

#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침

정부에서는 국민의 일체감 조성과 함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연중 24시간 국기 게양 및 국기의 대형화 등 범 국민적인 「태극기 사랑 운동」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, 아직도 일부 일선행정기관 및 민간건물 등의 경우 훼손된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불량한 국기게양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을 실추시키고 있으며, 건물·장소 등에 비해 너무 작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국기의 게양위치 및 대형화

### 가. 공공건물 및 각종 경기장·공원 등

- 공공기관·단체 등 단독청사의 기관장 및 공설운동장·공원관리사업 소장 등은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주위가 트인 장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되, 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협소한 국기게양대간의 간격은 이를 넓히도록 함
-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대형 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경우 건물전면 중앙벽면에 별도로 경사진 국기게양대를 설치토록 함

### 나. 가로기

- 가로기를 게양·관리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국 주요 간선 도로에 게양하는 가로기의 깃면 하단이 통행하는 차량에 접촉되지 않는 위치에 가로기를 게양토록 함

- V자형 꽂이의 가로기는 바람에 휘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깃면의 길이(가로)를 늘이지 않은 정규격의 국기를 게양토록 하고, 중앙분리대의 가로기는 깃면의 길이를 필요한 만큼 늘여 수직으로 게양(배너형)함

#### 다. 옥외 정부행사장

- 행사 주관기관의 장은 기 설치된 옥외의 주게양대에 대형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
-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는 전면을 바라다 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·게양함으로써 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함

#### 라. 옥내 정부 행사장

- 행사 주관기관의 장은 중·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깃면을 단상 뒷쪽 중앙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 구조에 알맞는 위치를 선정토록 함
- 회의실 등 소규모 행사장의 경우에는 실내 게양용(스탠드형) 국기를 게양하되, 단상 왼쪽(단상을 바라다 볼 때)에 설치토록 함

※ 다·라호의 경우 행사 주관부서의 장은 행사장 대여기관과 사전 협의 및 협동점검으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

## 2. 국기 관리 철저

- 국기를 게양·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게양된 국기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·관리하여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, 월 1회 이상 국기 및 게양대 상태를 점검하여 훼손된 국기나 게양대는 즉시 교체·보수토록 함  
※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가로기의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훼손되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특별관리

## 3. 국기 보급의 활성화

-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각급 일선기관의 민원실(읍·면·동사무소 포함)에 국기판매소를 설치도록 함
  - 또한 지역 주민들이 백화점·편의점·문구점 등에서도 연중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내 관련단체 또는 업체에 적극 권장토록 함

## 4. 행정사항

각급 행정기관은 본 지침의 이행에 솔선수범하고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단체 등도 적극 참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